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13
----------	-----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일

발 의 자 : 이동현 의원(1명)

찬 성 자 : 강동길, 김상진, 송재혁, 송정빈,  
오현정, 이병도, 이상훈, 이현찬,  
정지권, 정진술, 최 선, 한기영  
의원(12명)

## 1. 제안이유

인권담당관 조직개편에 따라 인권위원회 당연직 위원과 간사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사건 각하결정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인정하여 시민 권리구제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인권위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함(안 제15조 제2항).

나. 인권위원회 간사의 직급을 하향조정함(안 제16조 제7항).

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사건 각하결정 여부에 대해 일부 재량권을 부여함(안 제20조 제3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4호 중 ‘시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을 ‘시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중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를 ‘간사는 인권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상임 보호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이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7.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5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3. (생략) 4. 시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b>국장</b> (당연직으로 한다)</p> <p>제16조(운영) ①~⑥ (생략)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 부서의 <b>장</b>이 된다.</p> <p>제20조(직무) ①·② (생략)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li> <li>2. <u>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u></li> <li>3. <u>그 밖에 조사신청이</u>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u>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u>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li> <li>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li> <li>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li> <li>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u>다만 상임 보호관이 이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li> </ol>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설〉</p>	<p>제1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시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b>4급이상 공무원</b>(당연직으로 한다)</p> <p>제16조(운영)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 부서의 <b>담당사무관</b>이 된다.</p> <p>제20조(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u>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상임 보호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li> <li>2. <u>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u></li> <li>3. <u>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이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u></li> <li>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li> <li>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li> <li>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li> <li>7. <u>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u></li> </ol>